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용관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6. 18. 전기·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3. 6. 19.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 1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 3. 3.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3,417㎡를 신축한 다음 2004. 4. 1.부터 이 사건 토지 8,630㎡ 중 3,967㎡와 이 사건 건축물 3,417㎡ 중 2,355㎡를 청구의 (주)○○○○에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

여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 9. 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에게 임대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업종인 물류업인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되,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당해 사업”이라 함은 창업 당시 면제받은 최초의 업종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최초로 사업을 개시할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고 다른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의 당해 사업은 아니지만 당초의 업종을 영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면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 6. 18.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3. 6. 19. 사업의 종류를 전자부품제조업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003. 12. 30.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다음 2004. 4.